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기부금품법」 적용 배제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92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4.
3. 회 부 일 : 2024. 10.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면서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법률을 예외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 등의 출연 외면으로 인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의 「기부금품법」 적용 배제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이라 함)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¹⁾의 출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1. (생략) <u><신설></u>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동 법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가 설립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하여야 함²⁾.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³⁾,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

2)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30.>

1. ~ 2. (생략)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에 따른 상생기금에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재단이 적극적으로 상생기금 출연 모집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한·중 FTA 비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⁵⁾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7년 3월부터 설치·운영되어 왔는데,

4. ~ 5. (생략)

- 4)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5) 한·중 FTA 비준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 관련 내용

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 씩 10년 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 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 재단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한다.
 - 동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은 매년 1천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⁶⁾, 재단에 의하면 상생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간 조성된 기금은 약 2,519억원으로서 매년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개 사, 천원, %)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25,000 (98.9%)	2	300,900 (1.0%)	68	38,600 (0.1%)	30,964,500 (100.0%)
2018	30	17,930,304 (77.4%)	9	5,215,000 (22.5%)	27	13,500 (0.1%)	23,158,804 (100.0%)
2019	43	17,543,314 (77.6%)	26	5,045,190 (22.3%)	9	5,000 (0.1%)	22,593,504 (100.0%)
2020	65	20,434,868 (54.4%)	76	17,053,056 (45.3%)	16	107,411 (0.3%)	37,595,335 (100.0%)
2021	94	25,738,842 (56.5%)	70	19,683,670 (43.2%)	5	102,607 (0.3%)	45,525,119 (100.0%)
2022	101	15,945,206 (45.0%)	111	19,245,226 (54.3%)	7	226,200 (0.6%)	35,416,632 (100.0%)
2023	117	13,387,204 (43.9%)	103	16,941,254 (55.6%)	5	166,717 (0.5%)	30,495,175 (100.0%)
2024.11	102	9,473,664 (42.4%)	75	12,779,629 (57.2%)	8	80,500 (0.4%)	22,333,793 (100.0%)
다년협약 잔여분	1	70,000 (1.8%)	2	3,780,000 (98.2%)	-	- (0.0%)	3,850,000 (100.0%)
총 계 (중복제외)	567 (133)	151,148,402	474 (216)	100,043,925	145 (133)	740,535	251,932,862

※ 자료 : 행정안전부

6)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단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로 ‘농어촌 ESG 실천인증제’를 실시하고, 출연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지수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⁷⁾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임.

개정안과 같이 재단의 상생기금 모집을 「기부금품법」 적용의 예외가 되도록 규정하게 되면 재단이 보다 적극적인 상생기금 모금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기부금품법」이 기부금품 모집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⁸⁾,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경우 권력관계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이 준조세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가 있음.

「기부금품법」 제3조제1호부터 제11호는 ^①모집방법이 특수하여 동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기 어렵거나⁹⁾, ^②「기부금품법」의 절차를

7)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52개사 선정, 2025. 1. 16.

8) 「기부금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르지 않더라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¹⁰⁾, ^③ 「기부금품법」 상 기부와 그 목적이 다른 경우¹¹⁾ 등에 해당 동 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기부금품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법률>

구분	법률명
①	「정치자금법」
②	「결핵예방법」
③	「보훈기금법」
④	「문화예술진흥법」
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⑦	「재해구호법」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⑨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⑪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따라서,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생기금 출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이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 행위와 차이가 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이

9) 크리스마스썰을 판매하는 모집방법에 대해 규정한 「결핵예방법」,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식품으로 모집하는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됨.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공동모금 허용, 보건복지위원회의 감독), 「재해구호법」(전국재해구호협회와 행안부장관과 협의, 체계적 지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이 이에 해당됨.

11)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국민신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이에 해당됨.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부금품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법률 중 하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하여 영수증 발행·보관, 집중모금과 관련한 모집·모집종료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¹²⁾.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특례를 재단에게 이미 부여하고 있다는 점,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법률은 모집 방법이 특수하거나 모집·사용 절차를 「기부금품법」보다 엄격히 규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38

참고1

「기부금품법」 적용의 예외 사유

예외 법률 (특례기관)	소관부처	예외 인정 사유
①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	선관위	■ 성격의 특수성이 인정 ■ 정치자금 기부 금지, 회계처리 벌칙 등의 장치 마련
② 결핵예방법 (대한결핵협회, 사단법인)	질병청	■ 성격과 모금 방식의 특수성(크리스마스썸 판매) 인정
③ 보훈기금법 (미지정, 보훈부장관 지정)	보훈부	■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 대상 사업이 아닌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한정* *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서는 보훈부장관의 지정 필요
④ 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단체 989개)	문체부	■ 예술단체 육성 필요성 인정 * 관람료 중 일정액을 징수하는 모금방식 폐지('03.12.)
⑤ 한국국제교류 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외교부	■ 여권발급시에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징수)하는 특수성 인정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법인	복지부	■ 재원의 공동모금 및 중복 배분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특례 인정
⑦ 재해구호법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단법인)	행안부	■ 재난 피해의 효율적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사용(배분) 단일화 필요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신탁법인, 자연환경신탁법인)	환경부 문화재청	■ 국민의 기부, 성금 모금 등을 통해 위탁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자연유산 매입·관리 등 특수성 감안
⑨ 식품등 기부 활성화 에 관한 법률 (푸드뱅크사업자)	복지부	■ 장기간 보관이 곤란한 식품 특성 감안, 정부·지자체로부터 지도·감독 등을 받는 사업자에 한해 모집·배분·관리 특례 인정
⑩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 국가장학기금 조성 등 모집목적의 특수성 인정
⑪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자체 기부금 모집 허용

※ 자료 : 행정안전부